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0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박대수 · 임이자 · 정경희

윤영석 • 이만희 • 홍준표

이태규 • 구자근 • 김선교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및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이용,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공사준공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시공업의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

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부터 제9조의5까지, 제11조 및 제24조 등).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단서 중 "제8조제1항"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신고하고"를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으로, "승계한다"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를 "인

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제1항 중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를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 병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

- 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제36조의2 중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을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의3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의4제3항"을 "제9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제9조의3"을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호의2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을 "제9조제1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3제1항"으로, "제3항·제4항, 제9조의5제2항"을 "제4항·제5항, 제9조의5제2항", "제12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1항"으로, "제24조제1항·제3항"을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 하여 해당 지하수개발 · 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같은 항 각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호 외의 부분---------신고하고 같은 조 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 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 (7)·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신 설> 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③ (생 략)

제9조(준공신고)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 료신고) (생략)

<신 설>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준공신고)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료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

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 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 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렁으로 정한다.

의 사후관리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지하수개발 · 이용자가 지하수

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	(현
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5</u>	
<u>제3항</u>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의 사후관리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 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 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 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u>허가</u>·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 4.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 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다른 법인과 합
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
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u>역야 한다.</u> <신 설>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①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 건나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 ·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

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

인 및 합병 전의 법인의 지하

수개발 • 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 수개발·이용시공업을 계속하 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 수개발 • 이용시공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 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 고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 한다.

<신 설>

<신 설>

-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 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 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 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신 설>

제36조의2(대집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 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제13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 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 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 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제36조의2(대집행) ------제4항 및 제9조제3항-----

- 1	6 -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	
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	
터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37조의3(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ই
3.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3. <u>제8조</u>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	
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	
용중지명령 · 공동이용명령 또	
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_

- 4. <u>제9조제2항</u>(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생략)
- 6. <u>제9조의4제3항</u>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7 	조의3(벌칙)
1.	 • 2. (현행과 같음) <u>제8조제4항</u>
4.	- <u>제9조제3항</u>
	 (현행과 같음) <u>제9조의4제4항</u>
	~ 9. (현행과 같음) 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
 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 4. 5. (생략)
-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4. (생 략)

-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3의2. <u>제11조제3항</u>에 따른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 2. (현행과 같음)
3. <u>제9조의3제1항</u>
4.•5. (현행과 같음)
6
레4항
7. ~ 14.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에4U소(낙대료)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u> -

4.	•	5.	(생	략)

- 6. 제24조제1항 또는 <u>제3항</u>(제2 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7.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u>제2항</u>
7 (혀해과 간음)